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운영 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제안이유

○ 2018년 6월 준공한 성주역사충절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개인 및 전문단체에 민간위탁 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시설

○ 시 설 명 : 성주역사충절공원

○ 위 치 : 성주군 수륜면 신파1길 28-6 일원

○ 시설규모 : 부지면적 6,497㎡, 건축면적 584.32㎡(연면적 618㎡)

○ 주요시설

시 설 명	면 적	수량	시 설 명	면 적	수량
사 당	54.53㎡	1	문 루	1층 47.92㎡ 2층 47.92㎡	1
내삼문	15.42㎡	1	전시관	108.90㎡	1
전사청	17.63㎡	1	관리사	59.40㎡	1
강 당	111.09㎡	1	화장실	41.85㎡	1
동 재	54.17㎡	1	비 각	5.88㎡	1
서 재	54.17㎡	1	협 문	-	2

○ 위탁사무 : 시설 및 부대시설 외 제반사항

○ 운영보조금 (단위:천원)

계	운 영 비		비고
	전기료 및 수도료	오수처리시설위탁관리비	
25,000	18,000	7,000	

※ 운영비는 연간 예상액임.

4. 관련법령

○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관리・운영)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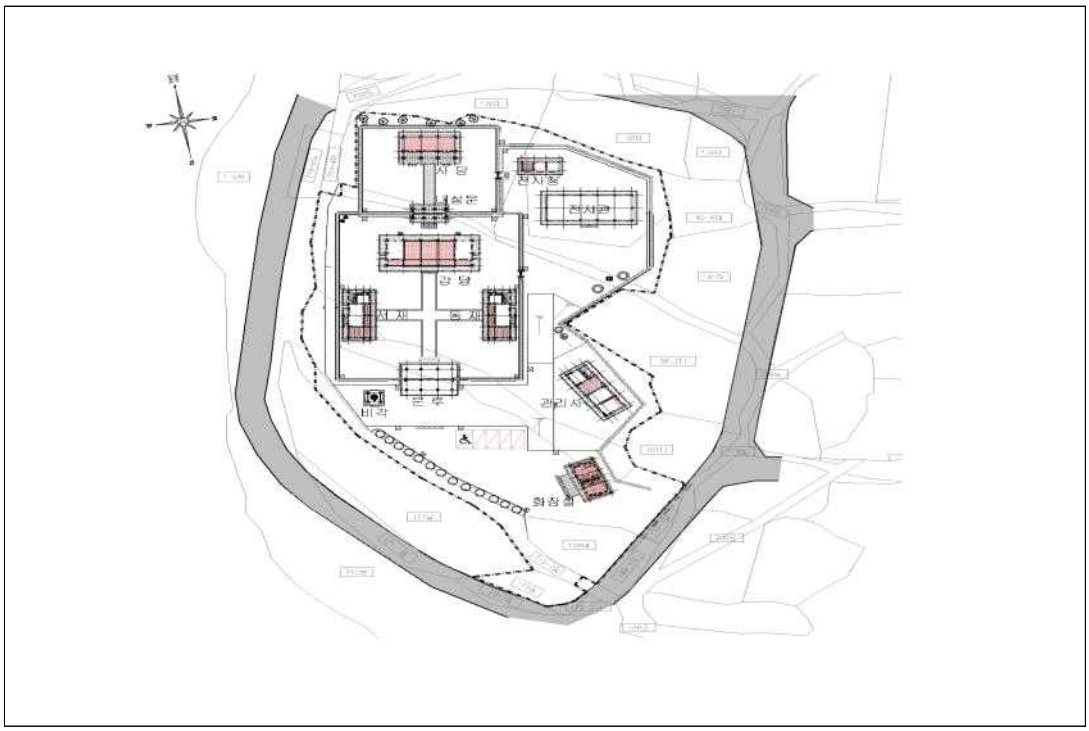
○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5. 참고사항

○ 시설사용료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고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주중	
동 재	54.17㎡형 (5인기준)	1동/1일	150,000	100,000	1실
서 재	54.17㎡형 (5인기준)	1동/1일	150,000	100,000	1실

○ 배치도 현황



6. 검토의견

○ 본 위탁동의안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민간탁 하고자 할 경우 의회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동의를 구하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 민간위탁은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요청되거나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경우 등에 시행하는 것으로써 역사충절공원은 도은 이숭인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알리는 문화관광형 시설로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전문 민간인의 시설 운영이 필요하며 우리군 관리 시설의 증가와 인력부족 등의 상황에서 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